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5. 9. 4 | 통권 제62호(2015-02) |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요약]

- 2010년 노사정합의는 장시간근로를 줄임과 동시에 양질의 시간제근로와 유연근로 확산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까지 감축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것을 선언
-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는 장시간근로 등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효과가 최대 3.3만~6.7만 명으로 나타나고(시뮬레이션 1),
 -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효과는 최대 11.2만~19.3만 명이며(시뮬레이션 2)
 -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15.7만~27.2만 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시뮬레이션 3)
-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이 균형(Work-Life Balance)된 일터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교대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르는 장시간근로에 치중한 전근대적 근로문화를 개혁하고, 양질의 시간제근로 활성화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유연근로를 확산하여 생애주기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

문제 제기

-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립,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2013년)으로 OECD 평균(1,671시간)을 4백 시간이나 초과하는 최장 수준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9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2020년 이내에…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고 합의
 - 고용률 70% 로드맵(2013년 6월)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전략에서 2017년까지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장시간근로 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확산, 유연근무 확산을 추진과제로 제시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 휴가 사용 촉진, 일·가정 양립형 일터문화 등을 제시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업의 고용효과

-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1,055천 명, 10.4%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4년) 자료에 포함된 근로자는 6월 급여지급기간 기준 14,044천 명이며,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0,105천 명이 분석 대상
 -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초장시간 근로집단)는 379천 명으로 3.8%,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인 근로자(장시간 근로집단)는 676천 명으로 6.7%를 차지
 - 이들 두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 중 509천 명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
- 초장시간 근로집단의 주당 근로시간은 67.5시간
 -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39.7시간(연간 2,064시간)
 - 장시간 근로집단의 주당 근로시간은 55.4시

〈표 1〉 근로시간 집단별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전 체	주당 총근로시간			
			(1) 40시간 이하	(2) 52시간 이하	(3) 60시간 이하	(4) 60시간 초과
전 체		10,105.5	6,055.7	2,995.1	675.5	379.2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1) 없음	없음	6,396.7	5,117.8	1,065.7	135.1	78.2
(2) 없음	12시간 이하	1,358.8	549.5	721.5	75.4	12.4
(3) 없음	12시간 초과	243.0	5.1	67.2	91.6	79.0
(4) 있음	12시간 이하	1,399.7	380.4	945.1	66.1	8.1
(5) 있음	12시간 초과	707.3	2.9	195.6	307.3	201.5
근로시간 특례업종		4,237.0	2,744.2	1,173.7	215.0	104.1

주: 5인 미만 영세사업체와 특수고용종사자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표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월간 총근로시간을 30/7으로 나누어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간(연간 2,880시간)이며,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5시간 미만(연간 2,337시간)

■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시간의 제한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

- 시뮬레이션 1: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주당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특별연장근로)의 한도를 60시간으로 제한
- 시뮬레이션 2: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주당 총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특별연장근로=0)
- 시뮬레이션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주당 총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
- 동일한 생산수준을 유지하고자 동일한 노동투입(=근로자 수 × 근로시간)이 필요하며,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산입으로 감소한 노동투입(해당 근로자 수 × 근로시간 감축)을 추가고용을 통해 보전한다고 상정하고 고용효과를 계산

■ 시뮬레이션 1: 총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미적용)

- 총근로시간 60시간 적용대상 근로자는 275천 명(2.7%)이며, 이들의 총근로시간은 67.3시간에서 7.3시간, 10.8% 감소

- 총근로시간은 평균 39.7시간에서 39.5시간으로 0.2시간(0.9%) 줄어드는 데 그침
- 노동투입 보전을 위한 추가고용은 60시간 근무자 기준 33.4천 명, 30시간 근무자 기준 66.8천 명으로 고용증가율은 0.3~0.7%

■ 시뮬레이션 2: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근로시간 특례업종 미적용)

- 총근로시간 52시간 적용대상 근로자는 736천 명(7.3%)이며, 초장시간 근로집단의 총근로시간은 67.3시간에서 15.3시간(22.7%), 장시간 근로집단의 총근로시간은 55.5시간에서 3.5시간(6.2%) 감소
- 총근로시간은 평균 39.7시간에서 39.1시간으로 0.58시간(1.5%) 줄어듦
- 노동투입 보전을 위한 추가고용은 52시간 근무자 기준 111.5천 명, 30시간 근무자 기준 193.3천 명으로 고용증가율은 1.1~1.9%

■ 시뮬레이션 3: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근로시간 특례업종에도 적용)

- 총근로시간 52시간 적용대상 근로자는 1,055천 명으로 10.4%
- 초장시간 근로집단의 총근로시간은 67.5시간에서 15.5시간(22.9%), 장시간 근로집단의 총근로시간은 55.4시간에서 3.4시간(6.1%) 감소

〈표 2〉 근로시간 집단별 총근로시간

(단위: 천 명)

		전 체	주당 총근로시간			
			(1) 40시간 이하	(2) 52시간 이하	(3) 60시간 이하	(4) 60시간 초과
전 체		39.7	33.6	44.9	55.4	67.5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1) 없음	없음	35.9	33.1	44.5	55.4	66.8
(2) 없음	12시간 이하	41.7	36.0	44.2	55.1	65.4
(3) 없음	12시간 초과	57.4	36.7	48.9	55.6	68.2
(4) 있음	12시간 이하	43.2	36.5	44.8	54.8	65.3
(5) 있음	12시간 초과	57.2	34.7	49.5	55.5	67.6

주: 5인 미만 영세사업체와 특수고용종사자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표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월간 총근로시간을 30/7으로 나누어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 3〉 초과근로시간 한도 제한의 고용효과

(단위: 천 명, 시간/주, %, 명)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시뮬레이션 3
총근로시간의 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모든 업종
	60시간	52시간	52시간
적용 근로자 (초장시간/장시간 근로집단)	275.1	735.6 (275.1/460.5)	1,054.7 (379.2/575.5)
총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39.5	39.1	38.9
근로시간 감소	0.20	0.58	0.81
근로시간 감소율	(0.5)	(1.5)	(2.0)
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67.3	67.3 / 55.5	67.5 / 55.4
근로시간 감소	7.3	15.3 / 3.5	15.5 / 3.4
근로시간 감소율	(10.8)	(22.7 / 6.2)	(22.9 / 6.1)
고용효과	동일 노동투입 유지를 위한 채용(채용률)		
60시간 근무자	33,422 (0.3)		
52시간 근무자		111,524 (1.1)	156,701 (1.6)
40시간 근무자	50,133 (0.5)	144,982 (1.4)	203,711 (2.2)
30시간 근무자	66,843 (0.7)	193,309 (1.9)	271,615 (2.7)

- 총근로시간은 평균 39.7시간에서 38.9시간으로 0.81시간(2.0%) 감소
- 노동투입 보전을 위한 추가고용은 156,7천 ~271.6천 명으로 고용증가율은 1.6~2.7%

- 이러한 고용효과는 기업의 업무강도 강화나 추가자본 투입을 통한 노동대체의 가능성에 따라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시사점

-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산입과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존재

-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287-6796 / jyahn@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방하남 / 편집인: 오상봉 / 편집·교정: 정 철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6603 / Fax : 044-287-6649 / www.kli.re.kr